

15.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(안)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제1999-63호 1999. 6. 3.

개정취지

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재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수도권의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, 취득세·등록세의 감면율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등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함.
- 나. 개인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개인투자조합,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금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출자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.
- 다.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당해 인수기업의 취득세·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분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.
- 라.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당해 중소기업의 사용인이 양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,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의 적용을

배재하도록 함.

- 마. 협회등록법인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5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함.
- 바.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수도권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의 이전시 현재는 이전공장 또는 본사사옥 취득가액의 3%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를 5%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.
- 사. 증권투자회사의 개인투자자가 지금받는 배당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부터 지금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999년부터 3년간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 과세형평을 유지하도록 함.
- 아.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과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한을 1999년 6월 30일에서 1999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고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함.

주택회보